



개인의 사이버 범죄 노출과 보장 확대 방안

김규동 연구위원, 김성균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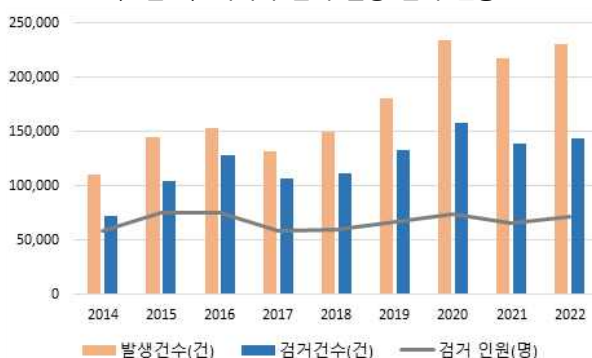
요약

국내 사이버 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사기나 사이버 금융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기업보다 개인의 사이버 범죄 피해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러한 개인의 사이버 위험은 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지만, 보험 가입 실적은 매우 미미함. 이는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인식 부족 및 홍보 부족 등을 이유로 들 수 있는데, 단체보험의 활용 등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통한 개인의 사이버 위험 보장 방안이 필요함

○ 국내 사이버 범죄는 증가 추세로 2022년 23만여 건이 발생하였는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사기나 사이버 금융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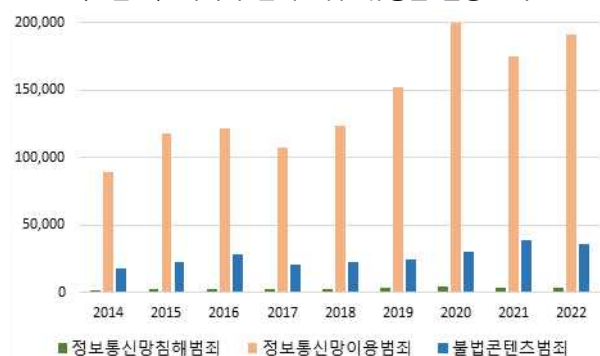
- 2014년에는 11만여 건이 발생(검거 71,950건)하였으나, 2022년에는 23만여 건이 발생(검거 143,885건)하여 8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음(〈그림 1〉 참조)
 -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비대면 활동의 급증으로 2020년 사이버 범죄가 23만 4천여 건으로 급증(전년 대비 5만 4천여 건)하였다가 2021년에는 21만 8천여 건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2년 다시 증가함²⁾
- 정보통신망이용범죄가 사이버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그림 2〉 참조), 2022년에는 82.8%(19만여 건) 수준임
 - 정보통신망이용범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저지른 범죄이고, 정보통신망침해범죄는 정보통신망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방식으로 저지른 범죄이며, 불법콘텐츠범죄는 법이 금지하는 정보 등을 생산·유포하는 범죄임(〈표 1〉 참조)

〈그림 1〉 사이버 범죄 발생·검거 현황



자료: 경찰청, 경찰통계자료

〈그림 2〉 사이버 범죄 세부 유형별 발생 건수



자료: 경찰청, 경찰통계자료

1)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2023), 「사이버범죄 트렌드(2023)」
 2) 경찰청, 경찰통계자료

〈표 1〉 사이버 범죄 세부 유형

구분	정보통신망이용범죄	정보통신망침해범죄	불법콘텐츠범죄
세부 내용	- 사이버 사기 - 사이버 금융범죄 - 개인·위치정보 침해 - 사이버 저작권 침해 등	- 해킹 - DDoS - 악성프로그램 등	- 사이버 성폭력 - 사이버 도박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자료: 경찰청, 경찰통계자료

-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보다 개인의 사이버 범죄 피해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개인의 사이버 리스크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개인이 대상이 되는 사이버 범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피해가 계속 확산되는 추세임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이버 사기(155,715건, 67.6%),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9,258건, 12.7%), 사이버 금융범죄(28,546건, 12.4%)는 대부분 개인을 대상으로 함
 - 2020년 국내 사이버 피해 규모는 기업은 약 6,956억 원, 개인은 9,834억 원으로 추정되어, 개인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³⁾
- 개인의 사이버 위험은 보험 가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데, 피해 규모에 비해 사이버 보험 가입 실적은 매우 미미하거나 리스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판매 중인 개인용 사이버보험의 보장은 사이버 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개인정보유출 등을 보장하고 있어(〈부록 표 1〉 참조), 충분한 가입이 이루어진다면 개인의 사이버 리스크를 상당히 보장할 수 있음
 - 개인용 사이버보험을 판매 중인 보험회사는 단독 상품 5개 사, 선택 특약 5개 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단독 상품은 보험기간이 1~3년이며, 선택 특약은 장기손해보험에 부가하는데 보험기간이 3~30년으로 다양함
 - 인터넷 쇼핑물·직거래 사기 및 사이버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보장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음
 - 일부 보험회사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배상책임 및 법률비용이나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보상하는 경우도 있음
 - 그러나 단독 상품은 판매실적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선택 특약은 사이버 리스크의 변화 속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단독 상품은 회사별 판매실적이 연간 수백~수천 건(연간 수입보험료 수백만~수천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임
 - 사이버 범죄는 시간 경과에 따라 발생 유형이 변할 수 있는데, 선택 특약은 장기손해보험에 부가된다는 점에서 보장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⁴⁾
 - 담보별 보장 규모는 자기부담금(10~30%)을 제외하고 1백만~5백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보이스피싱 등 일부 사이버 사고에서는 피해가 충분히 보상되지 않을 수 있지만, 보장금액의 제한은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측면에서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3) 한국정보통신보안윤리학회(2021), 「사이버 침해사고의 경제·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용역보고서

4) 선택 특약의 보험료 규모는 확인되지 않음

○ 개인용 사이버보험이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으로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개인의 인식 부족과 보험회사의 소극적 대응을 꼽을 수 있음

- 개인은 사이버 범죄 및 사이버 보안 등 사이버 리스크에 대해 안이한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임
 -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피해를 입지 않은 집단 간에 학력·연령·금융지식과 같은 요인들은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⁵⁾ 고령자·저학력자 또는 금융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사이버 범죄에 더 취약하다는 생각을 하기 쉬움
 - 우리나라는 강력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SNS에서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등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는데,⁶⁾ 이는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무관심이 원인이라고 판단됨
- 개인용 사이버보험(단독 상품)은 상품 특성상 다이렉트 채널에서 판매되고 있음
 - 사이버 리스크는 기술의 발전 및 사회 변화에 따라 그 양상이 변하므로 장기손해보험의 특약보다는 보험기간이 1~3년인 단독 상품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 단독 상품은 연간 보험료가 1~2만 원 이내로, 대면 채널보다는 다이렉트 채널 판매가 더 적합함
- 다이렉트 상품의 판매가 원활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거나 보험회사가 모집에 적극적이어야 하지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
 - 개인은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 보험회사는 상품의 낮은 수익성 때문에 홍보와 판매에 적극적이지 않음

○ 개인의 사이버 리스크 보장 방안인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체계약 중심의 보험 모집을 검토할 수 있음

- 개인이 보험 가입에 소극적인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단체보험 형태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가 있음
 - 여행사가 자사의 단체여행 고객을 여행자보험에 무료로 가입시키거나, 스키장에서 시즌권 구입 고객에게 상해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함
- 온라인 거래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단체보험 형태로 사이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상품을 홍보할 경우, 개인의 리스크 보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사이버 사기나 금융범죄는 중고거래 사이트나 쇼핑몰, 통신사, 금융회사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회사들이 주도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에 앞장설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개인 계약에 비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관리가 편리하다는 점에서 유리할 것임
- 다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보험 가입을 통한 소비자 보호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5) 김민정·김은미(2020), 「보이스피싱 피해 경험 및 영향요인 분석」, 소비자문제연구, 52(1)

6) NORDVPN 홈페이지(<https://nordvpn.com/ko/blog/national-privacy-test-korea/>)

부록

〈부록 표 1〉 개인용 사이버보험의 보장 내용 및 지급 사유

형태	보험회사	보장 내용	지급 사유
단독 상품	A사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보이스피싱, 해킹 등 사이버 금융범죄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인터넷 직거래·쇼핑몰 사기 피해	개인 간의 인터넷 직거래·쇼핑몰 사기로 금전적 사기 피해가 확정된 경우
		온라인 활동 중 배상책임 및 법률비용	온라인 활동중 1) 저작권 위반으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거나, 2)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등 형사방어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무죄인 경우 한정)
	B사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보이스피싱, 해킹 등 사이버 금융범죄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인터넷 직거래·쇼핑몰 사기 피해	개인 간의 인터넷 직거래·쇼핑몰 사기로 금전적 사기 피해가 확정된 경우
	C사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해킹 등 사이버 금융범죄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개인정보·신용 도용	‘개인정보·신용 도용’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를 입거나 가해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이버 폭력·스토킹	‘사이버 폭력·스토킹’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심리 상담 및 치료를 받은 경우
		사이버 협박	‘사이버 협박’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랜섬비용 등의 비용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피해 법률비용(제3자에 대한 소송과 관련한 법률비용)	제3자(기관, 법인, 개인 등)가 피보험자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유출하고 그 유출사실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등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
	D사	사이버금융범죄	‘사이버금융범죄’(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 해킹)로 인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E사	온라인금융사기	피보험자에게 「온라인금융사기」가 발생하여 입은 금전적 손해 보상
		온라인직거래사기	피보험자가 「온라인 직거래사기」가 발생하여 입은 금전적 손해 보상
선택 특약	F, G, H사	보이스피싱손해	전화금융사기 사고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또는 지출한) 경우
	I, J사	보이스피싱손해	전화금융사기 사고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또는 지출한) 경우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가해자에 대해 검찰의 기소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	피보험자가 인터넷직거래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에게 검찰의 기소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자료: 각 보험회사, 상품정보 및 공시자료